

예산총칙

2024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75,927,809	26,277,834
일반회계	780,520,392	23,415,612
특별회계	95,407,417	2,862,223
기타특별회계	95,407,417	2,862,223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40,371,419	1,211,143
일광유원지 조성사업	1,747,660	52,430
기장도예촌 관광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7,509,331	225,280
의료급여기금	620,361	18,611
지하수관리	327,646	9,829
폐기물처리시설	68,809	2,064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1,216,275	36,48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3,901,025	417,031
원자력발전지역개발	25,418,039	762,541
주차장	4,226,852	126,806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 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7,477,663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이용 할 수 있다.

제 6 조 금회 추경 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의존재원(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과 상급기관 공문에 의한 지방비 부담이 있는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금은 예산승인(명시이월 포함)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